

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개정안

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해외건설촉진법」(이하 '법'이라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'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', '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'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'해외건설업자'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.
2. '해외건설 관련센터'란 법 제15조의4,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'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', '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'를 말한다.
3. '중소기업'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.
4. '운영기관'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5. '인프라협력관'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.
6. '인프라지원관'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·보고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의1(위탁업무의 수행)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 다만,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

계획 및 예산서,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조의1(운영기관에 대한 지원)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의1(지도·감독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장 해외건설 관련센터 연계 운영

제6조의1(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)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.

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, 교육기관,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.

제3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

제7조의 1(조직 및 운영기관)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‘한-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’라고 한다.

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,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을 두며,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‘해외건설협회’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

운영기관은 ‘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’로 한다.

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,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④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,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의 1(기능)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

2.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. 다만,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·분석, 정책개발·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3.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

2. 중소·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·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

3.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

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
2.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, 개발, 사업화 등 지원 업무
3.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제9조의 1(조직 및 운영기관) 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‘해외 건설협회’로 한다.

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의 1(기능)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

제5장 행정사항

제1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000호, 2018.0.00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<u>‘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’, ‘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’ 및 ‘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센터’의 연계·통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<u>‘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’, ‘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’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‘해외건설 관련센터’란 <u>법 제15조의4, 제15조의2, 제1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‘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’, ‘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’ 및 ‘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센터’를 말한다.</u></p> <p>3. ‘해외도시개발사업’이란 <u>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4. ‘중소기업’이란 <u>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다만,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.</u></p> <p>5. ‘운영기관’이란 <u>해외건설 관련센터를 설립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‘해외건설 관련센터’란 <u>법 제15조의4,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‘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’, ‘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’를 말한다.</u></p> <p>3. <삭 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‘운영기관’이란 <u>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5. ‘인프라협력관’이란 <u>법 제15조의 4</u></p>

<p><신 설></p>	<p><u>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6. <u>‘인프라지원관’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정보를 수집·보고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센터의 운영원칙) ① 해외건설 관련센터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·제공, 정책연구, 해외 시장 제도·분석, 교육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해외건설 관련센터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센터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센터의 기능이 센터가 설치된 운영기관의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3조의 1(위탁업무의 수행)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 다만,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,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조(사업계획 수립) ①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사업</p>	<p><삭 제></p>

<p>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미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
<p>제5조(운영기관에 대한 지원)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 1(운영기관에 대한 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2장 해외건설 관련센터 연계 운영</p>
<p>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<u>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</u> 정한다.</p>	<p>제5조의 1(지도·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<u>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</u>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 ①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예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<p>2. 운영기관은 예산부족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도 정부지원예산과 자체 충당재원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3.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시 지출결의서, 영수증 그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,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분야별·시기별·내용별로 기록·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말 시행결과를 평가·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
<p><u>제11조(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·통합)</u></p> <p>① <u>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은 센터의 연계·통합을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은 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, 교육기관,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6조의 1(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)</u></p> <p>① <u>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, 교육기관,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.</u></p>
<p>제7조(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승인)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외</p>	<p><삭 제></p>

<p>건설 관련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서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
<p><신 설></p>	<p><u>제3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7조의 1(조직 및 운영기관) ① 해외 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‘한-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’라고 한다.</u></p> <p><u>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,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을 두며,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‘해외건설협회’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‘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’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,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④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,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</u></p>

	<p><u>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
<p>제8조(예산집행 및 회계기준의 적용)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집행 및 제6조에 따른 결산에 의한 기준은 정부의 예산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15조(기능) ① <u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. <u>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해외건설 정보 수집분야에 대한 역할 배분</u> 3. <u>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된 정보의 가공·제공</u> 	<p>제8조의 1(기능) ① <u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(현행과 같음)</u> 2. <u><삭 제></u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제12조(해외건설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등) ① <u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·분석, 정책개발·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 </div>	<p>2. <u>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. 다만,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·분석, 정책개발·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

<p>4. <u>해외건설 관련센터간의 연계·통합 운영방안 강구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4. <삭 제></p> <p>3. <u>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<u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<u>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</u></p> <p>2. <u>중소·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·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</u></p> <p>3. <u>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③ <u>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<u>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</u></p> <p>2. <u>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, 개발, 사업화 등 지원 업무</u></p> <p>3. <u>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
<p>제2장 해외건설 관련센터 연계·통합 운영</p>	<p><삭 제></p>

<신 설>	제4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<p>제13조(운영기관)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‘해외건설협회’로 한다.</p>	<p>제9조의 1(조직 및 운영기관) 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‘해외건설협회’로 한다.</p> <p>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세부 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
<p>제10조(해외건설 관련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·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 해외건설 관련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립하는 각종 세부 추진계획 2.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.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·통합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4.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 과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 2.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	<삭 제>

<p>사람. 다만, 위촉위원이 산업계, 학계,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</p>	
<p>제15조(기능) 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.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<p><u>제10조의 1(기능)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1. <u>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12조(해외건설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등)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·분석, 정책개발·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<p>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
<p>제3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</p>	<p><삭 제></p>
<p>제13조(운영기관)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‘해외건설협회’로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4조(조직)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, 비상근조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5조(기능) 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을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.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<p><삭 제></p>
<p>제4장 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센터</p>	<p><삭 제></p>

제16조(운영기관) 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 센터의 운영기관은 ‘한국토지주택공사’로 한다.	<삭 제>
제17조(조직) ① 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 센터에는 기획홍보팀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.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	<삭 제>
제18조(기능) ① 해외도시개발사업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법 제1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.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<삭 제>
제5장 행정사항	(현행과 같음)
제19조(제검토기한) <u>국토교통부 장관은 ‘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제11조(재검토기한) <u>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